

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15호 2002. 4. 16)

총무위원회
2002. 4. 29(월)

1. 심사경과

- 가. 2002. 4. 16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2. 4. 16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2. 4. 25 사천시의회 제6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

2. 제안설명요지(회계과장 최학림)

가. 제안이유

- 2002년도에 취득·처분할 중요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, 시의회 의결을 받아 취득·처분코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(1) 취득(변경분) 계상재산 (단위 : m², 천 원)

구분		건수	수량	금액	비고
취 득 (매입)	토지	28	12,539	818,641	
	건물				
	기타				

- (2) 매각(변경분) 계상재산 (단위 : m², 천 원)

구분		건수	수량	금액	비고
처 분 (매각)	토지	1	420	83,580	
	건물	1	494.25	69,195	10세대
	기타				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명돈)

- 변경 계획안의 문화예술회관주차장조성부지매입은사천시에서 건립하여 2001. 12. 31. 완공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관람객들의 주차불편이 초래

되므로

사천시 동림동 산53번지의 21필지에 11,440㎡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,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에 있으며,

- 사주취수장부지 회계간 재산무상이관은 1999. 8. 4. 상수도시설이 폐지된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608-9번지의 5필지 1,099㎡를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인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무상이관하는 것으로서, 지방재정법은 각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이관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되 공공용·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시영임대아파트 처분은 사천읍 소재 산성공원 순환도로 1994년도 시행한 개설공사시 편입된 영세민의 주거대책용으로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17-5번지 420㎡에 연면적 494.25㎡의 1동 4층 10세대를 1994. 7. 8. 건립한 아파트로서 공용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어 2002. 3. 21 용도폐지 되었고, 아파트 관리를 위해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보존가치가 없어 처분하는 것입니다.
- 해당 재산들의 취득과 처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위원	질 의 요 지	답 변 자	답 변 요 지
강 득 진 위 원	○도면상으로 볼 때 산으로 경사가 심한데 공사비와 땅값 등을 계산해 볼 때 평평한 곳을 사서 공사하는 것이 부가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비교·분석해 본 사실이 있는지?	회계과장 최 학 립	○이 부분은 산을 절개해야 하는 문제는 있지만 매입계획 대상지 밑에 있는 땅을 매입할 경우 건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상가도 상당하고,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매입에 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.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: 없음